

## 학생심리상담센터 규정

제정 2026. 5. 27.

**제1조(명칭)** 본 센터는 상지대학교 학생심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심리적·정서적·교육적 문제의 예방·해결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위한 학생심리상담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동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 내에 상담업무를 위한 약간 명의 전임상담원과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 내에 교육 및 연구업무를 위한 전임연구원과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한 팀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학생심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의 실시
3. 학습상담프로그램의 운영
4. 본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5. 센터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실시
6. 학생상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7. 심리적 고위험군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8. 학생의 심리안정 및 대학생활적응 목적을 위한 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상담에 필요한 사항의 실시

**제5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 ① 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센터 이용 학생

이나 주변 인물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그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 관련인 또는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③ 센터 관련된 기록(상담기록, 면접기록, 검사기록, tape, video tape, 편지 등)은 센터의 전문기록으로서 5년 동안 센터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

④ 센터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한다. 다만 센터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제6조(프로그램 평가주기 및 활용)** ① 센터는 상담 내담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

② 센터는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제7조(학생심리상담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심리상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교무연구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환류시스템 운영(신입생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와 프로그램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재정)** 센터의 운영재원은 본교의 교비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

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1416, 2026.05.27.)

이 규정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